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1. 26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위원회 (2008.11. 2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종 철

### 가. 개정이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도모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고,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 나. 주요 개정 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고,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박관수)

○ 동 건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직자 종교편향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2008년 9월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통보되고 공무원의 친절·공정의 의무가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동 조례안 제5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종교적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